

보도 시점 2026. 2. 1.(일) 12:00 배포 2026. 1. 30.(금) 16:00
(2026. 2. 2.(월) 조간)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법」 시행

- 단일법률 체계로 2.1일 시행,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 운용 기준 명확화
-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유연하게 하고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기업 연구자의 사기진작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 연구소 법’)」과 같은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에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하여, 기업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기업의 연구 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고도화된다.

① 연구 공간·인력·조직 운영 관련 제도개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더욱 유연하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공간·인력·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연구 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 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 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보완 기간 연장 및 겸임 허용

기존에는 인정 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하여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③ 현장 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도입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진 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정 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 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을 마련하였다.

④ 사칭 등 부정행위 금지, 과태료 기준 명확화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안착과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 개발 인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연구개발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 연구소는 국가성장파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동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부설 연구소 법 주요 내용은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 신고관리 시스템(www.rnd.or.kr) 내 ‘기업부설 연구소 법 주요 내용’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기업부설 연구소 법 주요 내용
- 2.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 현황

담당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보현 (044-202-4730)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류효진 (044-202-4732)
관련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	팀장	이정직 (02-3460-9011)

①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유연화

-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로 연구공간으로 인정
- 부소재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2개 이상으로 복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라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

② 보완절차 개선·인력 운영 부담 완화

- 인정기준 미달 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보완 기간을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대해 타업무 겸임을 허용

③ 현장조사·인정취소 절차 엄정화, 부정행위 제재기준 구체화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취소 신청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 현장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
-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500만원 이하),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 명시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득 및 허위 제출서류 작성 또는 이에 가담한 경우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④ 연구자 사기진작 및 연구성과 존중 강화

-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도입배경) '70년대 중반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분야에서 공공연구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역량 제고·활용 필요성 인식
 - '81년 53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하고,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요원 병역특례 등 지원제도 도입(신고·관리 업무는 '91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기업유형별 일정 수(벤처^{2명}, 소^{3명}, 중^{5명}, 중견^{7명}, 대^{10명}) 이상의 자격있는 연구전담요원 고용 및 독립적 연구공간(고정벽체출입문, 50m² 이하는 칸막이로도 허용) 확보

- (근거법 마련)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6.2.1. 시행)
 - ⇒ 기업부설연구소 규정을 「기초연구법」에서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제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및 관리 내실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

- (주요 지원사항) 연구소 설치 기업은 조세지원* 대상이 되며, R&D 지원사업 신청자격 획득 또는 평가시 가점 부여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 (설립 추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는 총 72,224개 운영 중 (기업부설연구소 39,486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2,738개 운영 (’25년 12월))
 - 기업 R&D 투자는 106.7조 원으로 국가R&D의 81.4%를 차지(’24년 12월)
 - 기업 연구원 수는 '23년 43.9만 명(72.7%), '24년 44.7만 명(72.7%)으로 증가

구분(개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계	72,019	75,586	78,406	78,190	75,265	72,224
대기업	922	890	921	906	875	831
중견기업	1,439	1,668	1,764	1,881	1,985	2,146
중소기업	69,658	73,028	75,721	75,403	72,405	69,247